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정부 및 국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법령제명을 띄어쓰기로 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 2. 20

보고자 : 김 찬 재